

[서식 예] 영업허가취소처분 취소청구의 소(유흥음식점)

소 장

원 고 O O (주민등록번호) OO시 OO구 OO길 OO (우편번호 OOO-OOO)

피 고 △△시 △△구청장 ○○시 ○○구 ○○길 ○○ (우편번호 ○○○-○○○)

영업허가취소처분 취소청구의 소

신 청 취 지

- 1.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〇〇. 〇. 〇.자로 20〇〇. 〇. 〇.부 유흥음식점허가 를 취소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.
- 2.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.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.

신 청 이 유

1. 원고는 ○○시 ○○구 ○○길 ○○ 소재에서 "☆☆"이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영업을 하여 오던 중, 위 주점에서 시간외 영업을 하였다는 이유로 적발되자 피고는 원고가 위와 같이 시간외 영업을 하였다는 사유로 식품위생법 제43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75조 제1항에 의하여 20○○. ○. ○.자로 원고에 대하여 20○○. ○. ○.부터 같은 해 ○. ○.까지 1달간 영업정지를 명하는 처분에 대해 원고는 동 명령을 충실히 이행하였습니다.



2. 처분의 위법성

이 사건 처분은 너무 가혹하여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위법이 있다 할 것입니다.

- 가) 원고는 20○○. ○. ○. 피고로부터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받아 ○○시 ○○구 ○○길 ○○ 약 80평의 실내에 룸 10개를 설치하고 "☆☆"이라는 상호로 유 흥주점영업을 해 왔습니다.
- 나) 원고는 동 명령을 준수하기 위하여 관리인인 소외 김□□을 시켜 패문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던 중 원고가 부재중 원고의 아들인 소외 홍□□가 절친한 친구가 군에 입대한다고 20○○. ○. ○. 밤20:00부터 동 주점에서 10여명이 모여 송별회를 한다고 맥주 3박스 등을 구입하여 회합을 가진바가 있습니다.
- 다) 그런데 피고는 이를 원고가 영업정지 중에 영업을 한 것이라고 오인을 하고 원고에 대하여 20○○. ○. ○자로 같은 해 ○. ○부로 영업허가를 취소한다는 처분을 하였으나 원고는 영업을 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처분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을 불이익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처분은 지나치게 무거운 것입니다 따라서 위 처분은 위법하며 취소되어야 할 것입니다.

입 증 방 법

1. 갑 제1호증영업허가취소통지서1. 갑 제2호증행정처분(영업정지)1. 갑 제3호증사업자등록증

첨 부 서 류

1. 위 입증방법각 1통1. 소장부본1통1. 납부서1통

 2000년
 0월
 0일

 원
 고
 00
 (인)

○ ○ 행정법원 귀중



관할법원	※ 아래(1)참조	제소기간	※ 아래(2) 참조
청 구 인	피처분자	피청구인	행정처분을 한 행정청
제출부수	소장 1부 상대방수 만큼의 부본 제출	관련법규	행정소송법 9 ~ 34조
비 용	·인지액: ○○○원(□□민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 참조) ·송달료: ○○○원(□□적용대상사건 및 송달료 예납기준표 참조)		
불복방법 및 기 간	・항소(행정소송법 8조, 민사소송법 390조) ・판결서가 송달된 날로부터 2주일내(행정소송법 8조, 민사소송법 396조)		

※ (1) 관할법원(행정소송법 9조)

- 1. 취소소송의 제1심 관할법원은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임. 다만, 중앙행정기관, 중앙행정기관의 부속기관과 합의제행정기관 또는 그 장, 국가의 사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공공단체 또는 그 장이 피고인 경우 대법원소재지의 행정법원에 이를 제기할 수 있음
- 2. 토지의 수용 기타 부동산 또는 특정의 장소에 관계되는 처분 등에 대한 취소 소송은 그 부동산 또는 장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이를 제기할 수 있음

※ (2) 제소기간(행정소송법 20조)

- 1.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함. 다만, 다른 법률에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때와 그밖에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 또는 행정청이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잘못 알린 경우에 행정심판 청구가 있는 때의 기간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함.
- 2.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(제1항 단서의 경우는 재결이 있은 날부터 1년)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함. 다만,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함